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사업

1 기 본 현 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□연례반복, ☑기간2018.01 ~ 2018.12		
사업내용	○ '14.4.16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행사 등을 개최		
사업위치	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		
총사업비	총 250,000천원	〔국비〕	〔시비〕250,000천원
	기타 (예산 외)	〔구비〕	〔기타〕
사업비 (당해년도)	250,000천원	〔국비〕	〔시비〕250,000천원
	기타 (예산 외)	〔구비〕	〔기타〕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행정국	총무과	신종우 2133-5605	김기봉 2133-5607	최선아 2133-5613

2 예 산 설 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7예산액 (A)	2018예산액(B)	증감 (B-A)	
				(B-A)*100/A
계	(x-) 0	(x-) 250,000	(x-) 250,000	(x-) 0
행사운영비	(x-) 0	(x-) 250,000	(x-) 250,000	(x-) 0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18년 예산내역		
행사운영비	○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사업 250,000,000원	=	250,000천원

과목구분	2018년 예산내역

□ **연차별 투자계획(투자사업의 경우)** 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기투자 (~2016)	2017	2018	2019 이후	비고
계	(x-) 250	(x-)	(x-)	(x-) 250	(x-)	
2018	(x-) 250	(x-)	(x-)	(x-) 250	(x-)	

3 사 업 설 명

□ **사업목적**

○ 세월호 참사의 슬픔과 교훈을 되새기며 그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가족(희생자)와 함께하는 추모행사 및 전시 등 추진

□ **사업근거**

○ 서울특별시 4、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

□ **사업내용**

○ 일 시 : '18.4월초('18.6.13 전국동시 지방선거 예정, 선거일 전 60일 전 해당)

○ 장 소 : 광화문광장 및 서울광장 등

○ 참 여 자 : 세월호참사 유가족 및 서울시민 등

○ 주요내용 : '18년 세월호참사 4주기 추념행사 등 개최

□ **사업계획(투자사업의 경우)**

○ 주요내용 : 추모식 및 추모전시 등

- 추 모 식 : 헌화분향, 추모사, 춤극, 합창 등
- 추모전시
  · 세월호 여행의 출발과 여정, 침몰과정 등 참사 이후 4년간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사진 전시, 동영상 상영
  · 참사의 아픔을 딛고 희망을 나눌 수 있는 메시지(손편지, 인터뷰 등) 전달

□ **추진경위**

○ '14.4.16 :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해상 여객선 세월호 침몰

○ '15.1.28 : 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등에 대한 시책 수립 의무 규정(제3조)

○ '17.9.21 : 서울시 4·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시행

- 인간존엄에 대한 시민 의식함양을 위한 세월호 참사 추모 시책마련 책무 규정

□ 2018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250,000	
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사업	2018.01~2018.12	250,000	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사업 추진

4 사 업 효 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